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4일, 진선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2024.12.9.)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11.)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1.)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 :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

현행법령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 등으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협의체의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로 인해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으로,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함된 협의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자 수 제한 조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생략)<br><u>&lt;신설&gt;</u> |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현행과 같음)<br>② <u>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br>1. <u>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 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u><br><u>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u><br><u>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u> |

<신 설>

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                                                                                              |                                                                                                                                                                                                                                                                                                                                                                                                                                                                                         |
|----------------------------------------------------------------------------------------------|-----------------------------------------------------------------------------------------------------------------------------------------------------------------------------------------------------------------------------------------------------------------------------------------------------------------------------------------------------------------------------------------------------------------------------------------------------------------------------------------|
| <p>② (생 략)</p> <p>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p> | <p><u>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u></p> <p><u>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u></p> <p><u>다.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u></p> <p><u>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u></p> <p><u>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u></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⑤ -----제4항-----<br/>-----<br/>-----<br/>-----.</p> |
|----------------------------------------------------------------------------------------------|-----------------------------------------------------------------------------------------------------------------------------------------------------------------------------------------------------------------------------------------------------------------------------------------------------------------------------------------------------------------------------------------------------------------------------------------------------------------------------------------|

현행 「사립학교법」은 관할청<sup>1)</sup>이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sup>2)</sup>가 해소되

1)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

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동법 제25조의3<sup>3)</sup>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동법 제24조의3<sup>4)</sup>은 심의 절차 등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동법 시행령 제9조의7<sup>5)</sup>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

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② 삭제 <1991. 3. 8.>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2)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
- ② ~ ⑥ (생략)
- 3)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 4) 「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시에는 ① 전·현직 이사 협의체, ②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③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sup>6)</sup>, ⑤ 관할청 등의 주체별로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따로 소집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관할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⑤ 삭제 <2024. 10. 8.>

⑥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이하 “대학평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⑥ (생략)

한편, 이번 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931호, 2024. 10. 8., 시행)을 통해 제9조의7제5항7)이 삭제되었음. 삭제된 제9조의7제5항은 전·현직 이사 협의체에 ① 법 제20조의28)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② 법 제54조의29)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③ 법 제61조10)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④

7)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7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 (생략)

9)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② (생략)

10)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등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이하 ① ~ ④의 사람을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라 함)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선임되어야 하는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었음.

동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정하면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 시에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 교직원 대표기구,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관할청 등 학교와 관련된 중요 주체별로 이사 추천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4931호, 2024. 10. 8., 시행)하여,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전·현직 이사 협의체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이 필요한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시행령 제9조의 7제5항을 삭제하였음.

| <b>(개정 전) 사립학교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843호, 2024. 8. 20., 일부개정)                                | <b>(현 행) 사립학교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931호, 2024. 10. 8., 일부개정) |
|----------------------------------------------------------------------------------------------|--------------------------------------------------------------|
|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 ④ (생략)<br><br>⑤ <u>조정위원회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청취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u> | 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br><br><삭제>                  |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 <b>(개정 전) 사립학교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843호, 2024. 8. 20., 일부개정)                                                                                                                                                                                                                                                                                                                                                                                                                                                                                                                                                                                            | <b>(현 행) 사립학교법 시행령</b><br>(대통령령 제34931호, 2024. 10. 8., 일부개정) |
|----------------------------------------------------------------------------------------------------------------------------------------------------------------------------------------------------------------------------------------------------------------------------------------------------------------------------------------------------------------------------------------------------------------------------------------------------------------------------------------------------------------------------------------------------------------------------------------------------------------------------------------------------------|--------------------------------------------------------------|
| <p><u>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u></p> <p>1.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p> <p>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p> <p>나. 법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p> <p>다. 법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p> <p>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p> <p>2. 제1호 외의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4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할 것</p> <p>⑥ (생 략)</p> | <p>⑥ (현행과 같음)</p>                                            |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담보라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로 인한

이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임시 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를 선임하게 하면서 임시 이사 선임 및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을 중립성을 가진 위원회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사학 관련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의 이해관계자가 다시 학교법인 이사회를 장악하여 학교법인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현직 이사 협의체에서 과반수 이상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사학 비리 등을 저지른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다시 이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행령 제9조의7제5항을 삭제한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또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 절차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학교법인과 관련된 주체들의 의사를 반영한 이사 구성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절차와 관련된 규정은 개정안과 같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을 것임.

####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전·  
현직 이사협의체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이 필요한 이사 후보  
자 수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도록 한 원안의 내용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생략)<br><br><u>&lt;신설&gt;</u> |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 (현행과 같음)<br><br><u>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u><br><br><u>1.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포함하여 구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협의체. 이 경우 나목의 사람은 그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 인원수는 해당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과반수로 하되, 가목의 사람만으로 인원수가 초과되거나 나목의 사람 중 마지막으로 구성원으로 포함될 사람들의 퇴직일이 동일하여 인원수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u> |

<신 설>

초과된 인원을 포함한 인원수를 협의체의 총인원수로 본다.

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임시이사는 제외한다)였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구

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직원 대표기구

나.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학생 · 학부모 대표기구

3. 추천위원회

4. 해당 학교법인(제1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설립한 종교단체

5. 관할청

6.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  
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  
보자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  
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할 것  
가.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  
임의 승인이 취소(임원 간  
의 분쟁을 이유로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  
외한다)된 적이 있는 사람  
나. 제54조의2에 따라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  
다. 제61조에 따라 파면의 징  
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다른 학교법

|                                                                                              |                                                                                                                                                                                                                                                                                                          |
|----------------------------------------------------------------------------------------------|----------------------------------------------------------------------------------------------------------------------------------------------------------------------------------------------------------------------------------------------------------------------------------------------------------|
| <p>② (생 략)</p> <p>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p> | <p><u>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가 인정한 사람</u></p> <p>2. 제1호 외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따라 추천받는 전체 후보자 수(동일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제2항 각 호에 따른 추천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로 계산한다)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할 것</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⑤ -----제4항-----<br/>-----<br/>-----<br/>-----<br/>-----.</p> |
|----------------------------------------------------------------------------------------------|----------------------------------------------------------------------------------------------------------------------------------------------------------------------------------------------------------------------------------------------------------------------------------------------------------|